KiRi 리포트 2019.3.11.
글로벌 이슈

# 미국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시장 현황 및 시사점

홍민지 연구원

요약

최근 미국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E-Scooter 공유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미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나,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E-Scooter[1] 공유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이동과 휴대가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 소형 전기 교통수단[2] 수요는 2017년 기준 26만 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8%의 성장률을 보임[3]
- 2017년 1월 라임이 미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라임[4]을 비롯하여 버드, 스킵 등 10개 내외의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버드는 2017년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1,000만 건의 이용횟수를 기록함[5]
  - 라임은 서비스 제공 시작 2년 만에 20억 달러의 가치(2019년 1월 31일 기준)를 지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함

## 미국 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1) 배터리가 장착되어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고 서있는 자세로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를 의미함
2)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함
3) CBC뉴스(2018. 9. 20), "美 전기스쿠터 각광, 틈새시장 공략 통했다"
4) 서비스 제공 시작 2년 만에 20억 달러의 가치(2019년 1월 31일 기준)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함
5) Techcrunch(2018. 9. 20), "Bird hits 10 million scooter rides"

- 2017년 후반이후 미국내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당한 환자가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6]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나,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가입은 필수적임

- 50cc 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 주가 대부분이나 이용자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오토바이, 스쿠터 등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7]
-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덴버, 마이애미, 시애틀, 시카고 등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함[8]
  -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 가입 및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임[9]

### 국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성장[10]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2018년 9월 킥고잉이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킥고잉, 지쿠터, 알파카 등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및 제주도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11]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소지[12] 및 차도 통행과 보호장비 착용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음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13]이며 지난해 9월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없음[14]

---

6)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제공되는 47개 도시의 110개 병원과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Consumer Reports(2019. 2), "E-Scooter Ride-Share Industry Leaves Injuries and Angered Cities in its Path"
7) NAIC(2018), "Scooter Sharing Creates Insurance Implications for Consumers"
8) https://foundershield.com/industry/micro-mobility/
9) III(2019. 2), "Spotlight on: e-scooters and insurance"
10)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2018),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3배 이상 증가 예상"
11) 지쿠터 영등포구(여의도)와 마포구 일대, 킥고잉은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알파카는 제주도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파이낸셜 뉴스(2019. 2. 22), "10분에 200원, 공유 전동킥보드 시동 걸었다"
12)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임; 도로교통법 제8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13) 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임; 중앙일보(2018. 11. 12),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첫 사망…지난해 사고만 117건"
14)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은 판매 중이나 공유 서비스만 이용하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음; 한국일보(2019. 2. 22), "보험사들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주저하는 이유는"

- 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 면허 없이[15]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으나, 무면허 또는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이 아님
  -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고 상황 증명과 손해사정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KiRi

15)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앱에서 기기 대여 시 면허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